

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06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 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대시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120다산콜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
- 관련법령
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 - 「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출연금)
 - ▶ “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”

나. 주요 사업

-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운영 (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)
 - 시정·구정 상담서비스 제공
 -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
 -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
 -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
 -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
 -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
 - 재단 사업 관련 업무시설 관리
 -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·운영 및 관리
 -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 전문상담기관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중심 소통행정 실현
- 상담관련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시정서비스 개발 및 제공

라. 기관현황

- 소재지 : 서울시 동대문구 난제로 28길 23
- 규모 : 연면적 4,615m² (지하1~지상5층)
- 위치도 및 전경사진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이미현 (☎2133-6542)

붙임

2025년도 120다산콜재단 세출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'25년 예산(안)
계		38,928,878
세입	출 연 금	37,631,063
	결산잉여금	1,297,815
계		38,928,878
세 출	사업비	9,458,212
	상담시스템 구축 및 운영	8,833,058
	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	1,718,895
	상담정보시스템 운영	1,635,721
	상담 체계 운영	83,174
	스마트상담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	7,114,163
	스마트상담센터 구축	6,500,000
	스마트상담센터 운영 활성화	614,163
	상담 역량 강화 및 감정노동 보호	625,154
	상담 역량 강화	244,939
	역량강화 교육	229,419
	상담지식정보 현행화	15,520
	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강화	380,215
	감정노동 보호 프로그램 운영	272,495
	악강성 민원 전담 관리	107,720
	인건비	20,600,960
	보 수	17,421,452
	무기계약근로자 보수	471,521
	기간제근로자 보수	249,523
	퇴직급여	2,458,464
	운영비	8,686,327
	경 비(일반운영비 등)	5,981,684
	시설비 및 자산취득비	554,440
	성과금	2,150,203
	예비비	183,379
	예비비	183,379

※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 가능함